

2010년도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공고

방송법 제38조에 의하여 「2010년도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. 3. 8.

방송통신위원회·한국전파진흥원

1. 사업 목적

-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및 미디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의 방송 접근성 강화 및 건전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2. 지원 분야

가.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

지원 분야	주요 내용
○ 방송환경조사	·시청지의 방송환경과 관련된 분석 및 제언 - 시청자 참여프로그램, 시청자평가원, 시청자위원회,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,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등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 운영 실태 조사·분석 - 소외계층 방송환경조사, 매체별 접근성 조사 및 시청행태 조사 등
○ 시청자권익증진 정책제안	·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시청자 권익증진정책 - 소외계층, 지역민을 위한 시청자 권익증진방안 -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시청자 권익증진방안 등

나. 미디어교육 지원사업

지원 분야	주요 내용
○ 미디어교육 교재개발	·미디어중독 예방활동에 대한 교재 개발 - 미디어중독, 역기능 등에 대한 예방교육 교재 (교재개발 및 보급활동 포함)
○ 미디어교육 활동지원	·다문화가정, 새터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 ·미디어역기능 예방 및 치료교육 ·학교(공교육) 미디어교육활동 지원 ·기타 창의적인 미디어교육 활동

다. 지원자격

- 시청자 지원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기관으로, 시·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 - ※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,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’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(기획재정부,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)
 - ※ 지원분야별 세부 지원자격은 사업설명 자료집 참조

3. 사업 추진기간

- 2010년 4월 ~ 9월

4. 신청기간 및 접수처

- 가. 신청기간 : 2010. 3. 8.(월) ~ 2010. 3. 19.(금)
- 나.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 (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제출 불가,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처 도착분 유효)
- 다. 접수처 : ☎ 138-950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IT 벤처타워 서관 14층 한국전파진흥원 시청자권익증진부 (☎ 02-2142-4446)
- 라. 유의사항 : 접수기한을 넘긴 경우와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는 접수하지 않음

5. 사업설명회

- 가. 일시 및 장소 : 2010. 3. 11(목) 15:00, 한국전파진흥원 14층 회의실
- 나. 신청서류 작성요령, 심사기준, 회계기준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안내
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cc.go.kr) 및 한국전파진흥원 홈페이지(www.korpa.or.kr)를 참조